

[별지 13]

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청소년증 발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4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
신청내용	신청구분	[]신규 []재발급(○분실 ○훼손 ○기타)			사진 3cm×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유효기한				
	청소년증 수령방법	[]방문 []등기우편			
	등기우편 수령주소 (우 -)				
	세대주(보호자)	성명	관계	주민등록번호	
주소		(전화번호:)			

위와 같이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진 1매 2. 청소년증(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신청안내

- 제출하는 곳: (신규 발급의 경우) 주소지 관할 시청·군청·구청
(분실 등의 경우)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청·군청·구청
- 신청자격: (신규 발급의 경우)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
(분실 등의 경우)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
- "등기우편"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청소년증을 찾아가셔야 합니다.
- "등기우편"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"등기우편 수령 주소"란에 기재된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급신청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청소년증 제작	→	청소년증 교부
신청인		특별자치도 시·군·구		특별자치도 시·군·구		특별자치도 시·군·구		특별자치도 시·군·구		신청인